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2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200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32932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32932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8.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8,02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0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새로이 내세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주식회사 C”을 “제1심법원의 C”으로, 같은 면 제9행의 “법원행정처장예”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예”로, 제10행의 “감정인 E에”를 “제1심 감정인 E에”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B는”부터 같은 행의 “차용하고”까지를 “B는 2017. 6. 22.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실제 B의 수령액은 차용금 100,000,000원에서 2%의 선이자를 공제한 98,000,000원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B에게 2017. 6. 22. 10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B가 위 부동산 매수 즉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뒤늦게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계약일은 위 차용일인 2017. 6. 22.임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에게서 별도의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일 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22.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위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B가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한편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에게서 차용한 100,000,000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도 적정가치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선순위근저당권인 C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도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켰으며 B의 자산상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위 주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볼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9. 5.경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처럼 거액의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2017. 6. 22.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던 점, ② 피고는 B가
자신에 대한 총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의 취득 및 사실상 담보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③ 피고는 10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B의 사업이 부진해지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구속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한 것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대금지급을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피고는 당시 B가 C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